

시각장애인인식개선 프로그램

프로그램 개요

I . 장애체험스쿨

1. 장애이해교육

- 시각장애이해교육
- 안내법 및 에티켓교육

2. 시각장애체험

- 흰지팡이체험 : 흰지팡이와 안대를 이용한 단독보행
- 저시력체험 :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저시력 보행
- 화면해설영화체험 : 화면해설 처리가 된 DVD를 안대를 착용한 후 관람
- 시각장애인컴퓨터 활용체험 :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안대를 착용한 후 체험
(방학 중 실시, 모집인원 6명 내외)
- 오델로 체험 : 시각장애인용 바둑, 오델로, 체스를 안대를 착용한 후 체험
(모집인원 10명 내외)
- 볼링체험 : 직접 볼링장에 방문하여 안대를 착용한 후 게임 진행
(방학 중 실시, 모집인원 6명 내외, 비용 - 본인 부담)
- 안내견 교육

II . 점자명함이름갓기

3. 점자명함 제작

-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함에 점자각인(1인 10장)
- 자체제작된 명함에 점자이름 각인

4. 점자스티커 제작

-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지에 점자를 각인하여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에 부착할 수 있는 체험

5. 한글점자교육

-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읽기 및 쓰기연습의 기초점자교육.

6. 점자편지나누기

- 시각장애 아동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사랑의 편지 나누기
- 편지 작성 후 주소(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421-19 현대프라자 402호 서울점자도서관)로 발송
- 봉투 겉 표면에 '점자재중' 이라고 표기 (우편료 무료/ 우편법 26조, 우편법 시행령 36조 근거)
- 작성 한 분량만큼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

7. 점자책 만들기

- 한글점자교육, 기초입력봉사교육
- 동화책, 동시집 등의 책을 체험자(기관)가 선정하여 한글워드로 입력 한 후 작성 된 전자도서를 kbubi@hanmail.net 로 발송
- 점자책발생
- 작성된 분량만큼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

8. 점자편의시설체험

- 교육장 주변 건물의 엘리베이터, 지하철 핸드레일, 관공서 안내판 등의 점자표지판 확인

신청방법

1. 기간 : 연중 진행으로 협의 후 결정.(평일 10:00~17:00 /토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
2. 모집인원
 - 학교 : 1일 최대 2학급 60~70명
 -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: 1일 최대 30명
3. 장소
 - 학교 : 교실 또는 시청각실
 -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: 교육실
4. 신청방법 :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와 이메일로 송부
 - FAX : 02-931-7427 / e-mail : wildpooh@hanmail.net
 - 신청서 다운로드 :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(www.kbuwel.or.kr)
사업소개 - 장애인인식개선
5. 신청 및 문의
 - 전화번호 : 02-935-9696 담당: 박승만
 - 주소 :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421-19 현대프라자 402호

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

★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(사회적인식개선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**인식개선**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**인식개선**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(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)
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도서관법

★ 제43조(도서관의 책무)

-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·지역적·경제적·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도서관은 장애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(이하 "지식정보 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1. 도서관자료의 확충,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
 2.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
 3.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,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
 4.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
 5.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